



서울고등법원

제5민사부

판결

사 건	2004나73681 손해배상(기)
원고, 항소인	1. A 2. B 3. C
피고, 피항소인	대한민국
제1심 판결	서울중앙지방법원 2004. 9. 8. 선고 2004가합21775 판결
변론종결	2005. 7. 26.
판결선고	2005. 9. 6.

주 문

1.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 A에게 100,000,000원, 원고 B, C에게 각 25,000,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



20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22면 둘째 줄 “제외국민”을 “재외국민”으로 고치고, 네째 줄 “31호증” 다음에 “32 내지 38호증”을, 다섯째 줄 “D” 다음에 “당심 증인 E”를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

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,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조용호 _____

 판사 김환수 _____

 판사 김운호 _____